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28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진선미ㆍ이기헌ㆍ김영호

이광희 · 송재봉 · 조승래

한병도 • 부승찬 • 임오경

황명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립대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가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사립대학에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,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립대학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3항 중 "절반을"을 "전부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업료등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5조(수업료등의 면제 등) ①・	제25조(수업료등의 면제 등) ①・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22조제1	③		
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			
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			
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			
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			
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.	<u>전부를</u>	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	